

BUSAN MONEY SHOW 2017

2017 부산머니쇼 참가신청서

신청마감 및 참가비 완납 : 2017년 9월 29일

접 수 일 :

접수번호 :

1. 참가업체내역 (□전년도 참가업체)

구 분	국 문			영 문		
회 사 명						
대표자명						
주 소						
		우편번호	-			
전시품목						
사업자등록번호		업 태		종 목		
담당자	성명(직위)	부 서		E-MAIL		
	전 화	팩 스		홈페이지		

2. 사용신청내역 (설치비 및 사용료 포함)

구 분	신청부스		단가 (VAT 포함)	금 액
부 스	독 립 부 스	() 개 부스	1,870,000원	원
	조 립 부 스	() 개 부스	2,200,000원	원
전 기	단상 220V(60Hz)	KW	55,000원 / KW (주간만 공급)	원
LAN(인터넷연결)		PORT	110,000원 / PORT	원
합 계 (VAT포함)				원

납부처 : 부산은행 320-13-000225-5 / 예금주 : (주)벅스코 / 유 첨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온라인 입금증 사본 각 1부

▪ 당 사는 2017 부산머니쇼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(이면수록)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참가 신청합니다.

2017 년 월 일

대표자 : (인)

**BUSAN MONEY
SHOW 2017**

2017 부산머니쇼 참가신청서

2017 부산머니쇼 사무국

(48060)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Tel. 051)740-7800 Fax. 051)740-3404
E-mail. busanmoney@bexco.co.kr Website. www.busanmoney.co.kr

2017 부산머니쇼 참가규정

제1조 용어의 정의

1. "전시자"라 함은 본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,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.
2. "전시회"라 함은 2017부산머니쇼(Busan Money Show 2017)를 말한다.
3. "주관자"라 함은 "벡스코(BEXCO)"를 말한다.

제2조 전시면적 할당

1. 주관자는 신청 접수순,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면적 및 위치를 할당한다.
2.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 할당된 전시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, 전시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3조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

신청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APEC로 55 소재 2017 부산머니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 총액의 50%를 납입하여야 한다. 전시면적은 신청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전시면적을 할당 기준에 의거 배정하며, 잔금은 신청 마감일과 동일한 2017년 9월 29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제4조 참가비

기본참가비는 독립부스일 경우 부스 당 ₩1,870,000원(부가세 포함), 조립부스일 경우 부스 당 ₩2,200,000원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
제5조 참가비 내역

참가비에는 전시장소, 24시간 외곽경비, 통로청소, 홍보, 전시회 디렉토리 제공 등이 포함된다.

제6조 설치 및 철거

설치 및 철거는 주관측이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측에 보상하여야 한다.

제7조 주관측에 대한 정보제공

전시자는 주관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2017 부산머니쇼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관측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8조 보험, 보안 및 안전

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. 주관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 조치를 강구할 것이나,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.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, 주관자는 필요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.

제9조 전시실 관리

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.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전시면적을 벗어날 수가 없으며, 주관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10조 현장판매

전시회의 참가목적은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를 실연하고 관람객에게 보여주는데 있으며,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 활동을 전개할 수가 없다. 단, 주관자가 별도로 정한 특별 코너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,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.

제11조 위험부보

전시자는 전시 스탠드 및 전시품의 도난, 훼손 또는 여하한 종류의 개인 상해에 대하여도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관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12조 해약

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 전시회 변경

주관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14조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에 따른 위약금

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을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납입하여야 하고, 잉여 시 반환한다.

- 전시 개시일 2개월 이전 취소 :
참가비(부스비)또는 축소분의 50%를 위약금(부가세없음)으로 납부
- 전시 개시일 2개월 이내 취소 :
참가비(부스비)또는 축소분의 80%를 위약금(부가세없음)으로 납부

제15조 보충규정

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BEXCO의 제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6조 분쟁의 해결

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